

연구노트

-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 과제(II): 가족 관련 판례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양립 갈등과 건강영향 연구: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체 북한이탈 입국자는 2013년 9월 현재 25,649명을 넘었고, 이 중 여성 인구는 17,820명으로 6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여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의 5년 전후 취업실태와 직장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취업실태, 직장적응실태, 직장만족도와 직장적응도, 직장 내 차별실태, 직장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취업 및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5년을 전후하여 취업 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북한, 제3국, 남한에서의 직업연관성과 현재 직업의 지역연관성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전문직에서는 북한에서의 직업과 현재 직업 간 직업연관성이 있었으나 현재 직업의 지역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수준이었다. 5년을 전후하여 직장적응도는 5년 이전에 비해 5년 이후의 점수가 높아 고무적으로 보였으나, 직장만족도는 '약간 만족'수준으로 5년 이후가 더 낮았다.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개인문제영역, 가족문제영역, 일자리문제영역 중 가족문제가 가장 컸다. 직장 내 차별 실태에서, 성차별 경험과 관련해서는 채용 5.1%, 승진 5.8%, 임금 9.4%, 업무배치 8.4%로 인구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은 7.0%였으며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남한거주 5년 이상의 취업·비취업 북한이탈여성 20인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비취업 북한이탈 여성군의 문제점으로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외래어 및 전문용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30-40대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에 남한에 입국하여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50-60대의 경우 남한 입국시 취업연령대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직을 하였다고 하였다. 취업 북한이탈 여성군의 직장생활적응의



성공요인으로 남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특히 남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들의 말이나 행동, 생활습관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으로 ① 취업장려금 활용기간 3년 유예기간 적용, ② 지역수요-직무환경 조화를 고려한 직종개발 및 운용, ③ 취업-복지 기초수급자 지원체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신체·정신 건강프로그램과 취업지원 연계, ⑤ 북한이탈여성 밀집거주지역에 “육아품앗이 협동조합 시범사업” 도입, ⑥ 스피치교육 과정 신설, ⑦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체 인사멘토제 도입, ⑧ 남한시민 대상의 남북문화 이해를 위한 시민 교양교육 활성화, ⑨ 공공기관에 일정비율의 북한이탈여성 취업할당제 도입, ⑩ 성별분리 통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II) – 가족 관련 판례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가족 관련 법제는 오랫동안 관습법의 영향으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잔존해왔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전형인 호주제도와 가족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원칙을 정한 법정 상속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율하는 친권의 영역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남녀차별적인 규정들이 많이 시정되었고,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까지 폐지되어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의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그동안의 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의 여성 및 자녀들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의 최종 판단인 판례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밝혀내고, 그에 대해 현행법의 한계가 존재한다면 입법과제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여기에서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란 관련 심판 및 재판과정에서 성별이 고려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그러한 성별 고려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거기에 내재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가사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들과 달리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학술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사사건 기록에 대한 유일한 통로는 대법원의 판결문 특별열람실에서



열람하는 방법밖에 없다. 관련 사건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제공되기 때문에 성인지적 분석에서 가장 필수적인 성별 정보와 연령 정보를 재차 열람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청구권 문제와 자녀양육비 문제, 신분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후의 제한점으로는 비송사건의 경우 소송사건과 달리 결정 이유가 판결문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기각 사건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수집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이라 함은 개개 판결문에 담겨있는 주요 자료¹⁾를 양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주제별 판례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련 주제에 대한 판결문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관련 주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법리 등의 내용 정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가. 친양자 입양 관련

2008. 1. 1. 친양자 입양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7,000건 이상의 친양자 입양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의 사건이 인용되었다. 인용 사건에는 사실관계나 판단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기각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008. 1. 1.부터 2013. 2. 5.까지 선고된 친양자 입양 기각 사건 총 262건을 분석한 결과,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건은 229건으로, 87.4%가 계자 입양을 위해 친양자 입양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청구인이 남성인 경우가 200건(87.3%)으로 절대 다수가 계부가 계자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분석되었다. 기각 사유는 대부분 친양자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생부모의 동의 흠결로 기각된 것이 과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계자의 친양자 입양이 그의 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는지에 관하여 친양자 파양사건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8. 1. 1.부터 2013. 7. 16.까지 선고된 친양자 파양 판결 총 45건 중 기각된 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혼을 이유로 계자에 대하여 친양자 파양을 청구

1) 예를 들면 청구인의 유형, 성별, 연령, 자녀의 수와 성별, 연령, 인용 여부, 결정시 고려 요인, 기각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제별 어떤 자료들이 양적 데이터로 변환되었으며, 어떻게 유형화하였는지는 해당 주제별 분석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경우도 26건이나 되었는데 모두 파양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친양자 입양된 계자는 자신의 친생친과 양친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언제든지 그 입양관계가 해소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처가 요구된다.

장래 재혼가정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양자 입양을 손쉽게 허용하는 것은 계부 중심의 성역할이나 부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자녀를 재혼부부 간 애정확인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양친될 사람과 친양자될 사람 사이에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계자입양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의 경우와 같이 3년간의 혼인생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양부모의 혼인관계 해소만으로 손쉽게 친양자 입양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일단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 있는 양육이 가능하도록 친양자 입양의 파양사유를 오로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자녀의 성·본 변경 관련

2008. 1. 1.부터 2012. 2. 5.까지 성·본 변경청구가 기각된 1심 결정은 총 961건 중 모(母)로의 성·본 변경을 원한 경우는 546건(52.9%), 계부로의 성·본 변경을 원한 경우는 344건(33.3%)이었다. 기가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부로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모(母)로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의 일부 결정에서는 모가 혼자서 양육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혹은 재혼가능성이 있다든가 모(母)의 성·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입법대안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성·본이 누구의 것인지 불문하고 이를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성·본 변경 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모(母)로의 성·본의 변경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부성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 자녀 양육비 관련

2012. 5. 31. 서울가정법원이 부부의 소득합계액, 자녀 나이와 거주지역,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였다. 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제 재판자료로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근 하급심의 양육비 결정 경향을 살피고자 2012. 6. 1.부터 2013. 2. 5.까지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5개 지역에서 검색어를 ‘양육비’로 검색한 총 992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992건 중 엄마가 청구인인 경우는 80.3%로 자녀의 실제 양육자가 대부분 엄마로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비의 문제가 아동의 복리 문제와 함께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한부모가정의 빈곤 가정으로의 전락을 막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양육비를 다룬 하급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장래 양육비 결정이 내려진 883건 중 847건에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심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38건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사례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첫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가 23.2%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의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면서 생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판례 분석의 한계로 집행의 문제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이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책정된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라. 재산분할 관련

최근 재산분할 사건의 처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2012. 1. 1. 부터 2013. 2. 5.까지 다루어진 재산분할 사건 총 1,053건을 분석하였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청구인의 성별을 보면 69.2%가 여성으로 여성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1998년과 2005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50%를 기준으로 볼 때, 1998년과 2005년에는 50% 미만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 비하여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40%로 감소하였고, 50%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50%를 초과하는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건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여성재산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일 때 정기소득자보다 약 17% 정도 재산분할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포기 내지 감소한 사회생활과 임금 기회 상실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경험이 임금노동시장과 연계될 때 남녀의 삶에 각각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해서는 우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균등분할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유지 또는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양립 갈등과 건강영향 연구 :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맞벌이 부부가 우리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일·가정양립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직장과 가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 잡힌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 역할의 규범이 존재하는 우리사회에서 맞벌이 여성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면서 갈등(work-family conflict)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가정양립의 문제는 일(work)과 가정(family)이라는 두 영역 간에 배분된 '시간'이 비균형적일 때 주로 발생된다. 유럽기금은 최근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 생활 병행을 돕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임을 지적하였다. 최근 건강, 여가, 인간관계 등 삶(life)의 영역을 아우르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개인의 일과 삶의 동등한 상태를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있어 중요하는데, 이러한 '균형'을 깨는 결정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임을 지적하였다. 즉, 일·가정 균형에 근로시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삶의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에 문제를 가져와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불건강(unhealth)으로 인한 삶의 불균형(unbalance)은 다시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양립)에 있어 가장 취약한 맞벌이 여성 보다는 일반 여성으로 그 대상을 포괄하고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맞벌이·비맞벌이 남성 및 주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계열상의 변화도 살펴보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지닌 영향력과 정책적 성과 및 함의를 찾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함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테면, 그동안의 거의 모든 연구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이들 개별 요인들이 실제 건강과 다양한 삶의 영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성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다각적인 접근에는 제한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및 비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특성별 평일과 주말의 가사노동과 건강관리에 할애하는 시간량과 시간대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따른 시간부족과 피로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맞벌이 여성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서 과소/과대로 구분하여 일이 가정생활에 혹은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갈등의 특성과 우울과의 구조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일·가정 양립 갈등과 건강의 상이한 양상을 제시한다.

셋째,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이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건강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한 올해 상반기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한 자동차업계 남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일·가정 양립 및 건강상의 변화, 더 나아가 인간관계 등 삶의 변화경험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변동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